

경비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안황권* · 김일곤**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이용,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urity Provider's

Ahn, Hwang Kwon* · Kim, Il G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file actual cond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operated in overseas countries and examine major consider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security service providers must know in the capacity of privacy information processor,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reventing potential occurrence of any legal disputes in advance. Particularly, this study further seeks to describe fundamental idea and principle of sai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hancement of various safety measures (e.g. collection / use of privacy data,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 personal ID information, and encryption of privacy information);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 operation of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and penal regulations as a means of countermeasure against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proposing possible solutions to cope with these matters. Using cases among foreign countries for this study. Possible solutions proposed by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By changing minds with sufficient legal reviews, it is required for security service providers to 1) clearly and further specify any purposes of collecting and using privacy information, if possible, 2) obtain any privacy information by legitimate means as it is necessary to collect such information, 3) stop providing any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3rd parties or for any other purposes except fundamental purposes of using privacy information, and 4) have full knowledge about duty of safety measure in accordance with safe maintenance of privacy information and protect any personal information from unwanted or intentional leakage to others.

Key words :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

접수일(2011년 9월 30일), 수정일(1차: 2011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0일)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대구과학대학 경호무도과(교신저자)

1. 서 론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활발하다. 민간분야에서 수집·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비대면 상태에서의 이용자 식별 및 고객 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이용에 따른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못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사건 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민간경비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경비업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경비업자로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이 9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비업자가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민간 전체를 아우르며 영향평가 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 등 각종 신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비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실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를 경계하고 방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비업무 및 관련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취급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실시와 관련하여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이용,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법적분쟁이 예상되는 영역을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과 경비업자의 의의

‘경비’라 함은 위해상황을 대비하여 경계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1]하는데, 이러한 위해상황, 즉 화재나 도난 또는 혼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비업은 이러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업무를 의미하는데, 현행 경비업법 상에서는 경비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의미하며[2], 또한 ‘영업’이라 함은 영리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3]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업자를 ‘경비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업자는 반드시 법인허가를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2.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배경은 최근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면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프라이버시는 19세기말 이래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와렌과 브란데이스(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가 신문 등에 개인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논문을 발표[4]하였으며,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래에는 프라이버시 보다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라는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Flaherty(1989)[5]는 1974년의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 1982년의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법, 1988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 법 등에 대하여 그 명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법’이지만, 실제로 법적 보호의 대상은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프라이

버시법이라는 명칭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6]. 따라서 개인정보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내지 프라이버시 권리와 개념적으로 구별될 필요성이 있다.

2.2.1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개념과 정의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등으로 개념정의 되고 있다[7]. 즉,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질,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

2.2.2 프라이버시(privacy)의 개념과 정의

프라이버시권은 Warren 등(1890)에 의해서 독자적인 권리로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그 들은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9]하여 언론에 의해서 침해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를 주장하여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프라이버시는 헌법상 인격권인 프라이버시와는 구별되어,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제공된 자신에 관

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0].

2.3 해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3.1 OECD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국제기구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대응방법으로 권고·지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다. 1980년 9월 23일에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권고’(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이다.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이유는 컴퓨터 및 인터넷에 의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처리됨에 따라 이들의 자유로운 유통을 확보하면서도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의 법제도의 통일성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이러한 배경에서 OECD 회원국들은 1970년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 개인의 데이터 보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대응 가능한 법률 정비를 실시하였다[11].

OECD 각국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가능케 할 수 있도록 1980년 9월 23일 OECD 이사회권고의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12].

OECD 이사회 권고[13]의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권고 제7조부터 제14조에 구성되어있는 8개의 원칙으로써 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데이터 내용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명확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보호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⑦ 개인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을 제시하였다[11].

2.3.2 미국

미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공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을 각 산업부문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은 헌법이나 판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보호를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11].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국의 입법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분야별로 이루어졌다.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프라이버시 규제는 민간부문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은 정부기관들이 ① 관련한 필수적인 개인정보만 저장, ② 데이터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까지만 정보 수집, ③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 유지, ④ 기록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다[14].

민간부문에서는 금융거래와 같은 산업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들도 다양하게 제정하였다. 1970년도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공정신용평가법(Fair Credit Report Act)」, 1974년도 교육정보를 보호하는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1978년도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80년도 출산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1984년도 케이블통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블통신 정책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1999년도에는 고객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현대화법(Grimm-Leach-Bliley Act)」, 2000년도에는 2003년 4월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한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등과 같은 관련법들이 있다[11].

2.3.3 일본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 역시 다양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노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35%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의 이메일과 웹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5]. 일본은 상기 사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문제와 “EU개인정보지침”에 따른 해외 정보이전 제한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었으나, 1988년에 제정된 공공부문에서의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관계된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95호)이 있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할부판매법」(1961법률 제 159호)과 「대금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3년 법률 제32호)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이 미국과 동일하게 부분적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입법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포괄적인 준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5개가 가결되었다. 이들 5개의 법률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유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등의 보유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사의 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고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등에 관한 법률」이다[11].

2.2.4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사례의 시사점

OECD 가이드라인, 미국의 다양한 산업별 개인정보보호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모두가 다양하고 세부적인 준수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기업, 정부 기관 등)들이 개인정보보호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유출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도 많은 개인 사업자 등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비업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경비업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민간경비업자의 경우도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의뢰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3.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이념과 원칙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16] 내용에 기준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경비업자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업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이용목적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할 때 ‘긴급연락처에 대해서는 긴급사태발생시에 연락 및 본인확인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16]. 셋째,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비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비업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일곱째,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경비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6].

3.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경비업자(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6].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한정 이용을 배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이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수집목적에 비추어 과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16].

3.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경비업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6].

3.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CCTV 등을 설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누구든지 특별히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상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6].

3.5 개인정보 유출대응 강화를 위한 벌칙 강화

경비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벌칙과 과태료 등이 강화되어 있다.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기존 관련 법률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벌칙을 강화하였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있다[16].

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

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이용·관리 등에 관한 벌칙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경비업자의 대응

4.1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원칙에 대한 이해와 업계의 인식 변화

개인정보 이용목적에 있어서 민간경비업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경비활동을 위해', '손님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라는 등의 추상적인 설명은 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방침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고객의 권리이익보장의 관점에서 사업활동의 특성,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고객 유형에 따른 이용목적'을 한정하거나, 고객의 선택에 따른 이용목적의 한정을 스스로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스스로가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수 있다.

또한 경비업자가 업무 도급을 위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서면으로 된 개인정보 이용 목적서류를 제공토록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하여 경비업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처리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비협회는 협회의 가맹된 경비업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이번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가맹된 경비업자가 해당법령의 숙지 미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에 방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비업자가 도급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유출 등의 문제 발생, 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결국 민간경비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분쟁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경비협회는 이러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간경비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공지 또는 필요에 따라 법령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동경경비협회'는 가맹 민간경비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협회가 업무 특성에 맞도록 제정하여 가맹회원 경비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적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소홀 할 수 있기에, 경비협회는 이들을 대신하여 가맹회원 경비업자가 법적 분쟁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변화하게 될 경비업계의 상황을 예견하여 대비하는 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4.2 개인정보의 수집과 수집방법에 대한 대응

4.2.1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

기본적으로 경비업자는 도급 계약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16], 업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16]의 경우 기본적 동의 이외에 반드시 별도의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의미하는 '별도의 동의'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비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통지받고 이를 확인하고 승낙하는 의사표현을 말한다. 이때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더욱더 특정하여 명확하게 명시한 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의 여부로 인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론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있어서는 문서상 '제3자에게 제공'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재하면 되며, 그 이상의 특정은 필요하지 않다

[16]. 그러나 본인의 동의를 근거로 경비업무 특성에 맞게 동의서를 특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O회사, OOO회사 그 외 제3자에게 제공'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4.2.2 개인정보 수집시 적절한 방법에 따른 정보 수집

경비업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된다[16]. 여기서 부정한 수법이라 함은 범죄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절도, 무단복사, 이용 목적을 초과한 민감정보, 협박, 도취(盜取)·도찰(盜撮)한 정보를 뜻한다. '부정한 수단'의 사례로는 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충분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한 어린이(미성년자)로부터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타 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후 그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11].

또한, 본래의 목적을 은닉하고 '양케트 조사 응답에 대한 추첨 후 선물증정' 등과 같은 허위의 목적을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래의 이용목적에 위배한 것이므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6]. 이후 해당 개인정보를 판매활동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다른 것이므로 위법 사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제3자 제공에 관해 개인의 동의[16]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되어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적 분쟁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3 개인정보의 이용방법에 대한 대응

4.3.1 이용목적 변경 및 이용목적외 이용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용 범위를 통지하고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목적 외에 이용하고자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용목적은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16].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일부 관련성을 갖고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16]. ‘합리적인 범위’라함은 통상적으로 정보주체(본인)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경비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지사항을 이전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던 것을 새롭게 전자우편으로 추가하는 등의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공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한다[16].

4.3.2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경비업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6].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다[16].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71조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으므로 경비업자는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위반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4 개인정보의 관리방법에 대한 대응

4.4.1 종업원에 대한 이용관리 철저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관리·감독[16]을 행하거나,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해당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종업원(파트타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 종업원) 등에 대해 철저하게 이용준수 내용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종업원에 대한 이용 준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서·매체의 관리, ② 액세스 제한, ③ 개인정보 방치 금지, ④ 목적 외 개인정보 검색·열람금지, ⑤ 복사·외부 유출 제한 등이다.

4.4.2 타 부서간 이용관리 대응

개인정보보호는 법률상 사업자의 단위로 구분되어진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타부서로 제공되는 경우 동일 사업자 내부에서 정보가 제공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명·주소 등이 기재된 사내문서가 타부서에 제공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가 본래의 이용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은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상당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16]. 만약 이용목적은 변경하였다하여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즉, 정보주체 본인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 여야만 한다. 또한 변경이 인정되었다하여도 변경된 이용목적 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16].

아울러 경비업자는 이상의 해당사항에 대한 법규를 적절히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종종 사업자내 부서간의 개인정보 공유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방

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경비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시행도 경비업자에게도 중요한 법·제도적인 환경 변화 중에 하나이다. 이제 경비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공공과 민간의 공동된 처리기준과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표준지침)이 정립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경비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원인은 기술과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경비업체의 임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전면 시행된 마당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할 때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경비업자 및 경비협회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비업계의 업계의 인식 변화이다.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경비활동을 위해', '손님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라는 등의 추상적인 설명은 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방침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고객의 권리이익보장의 관점에서 사업활동의 특성,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고객 스스로가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비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도급자의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적절한 취득방법 및 이용 목적을 통지하는 등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도급 계약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16], 업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16]의 경우 기본적 동의 이외에 반드시 별도의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시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16]이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정한 수법이라 함은 범죄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절도, 무단복사, 이용 목적을 초과한 민감정보, 협박, 도취(盜取)·도찰(盜撮)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함에 있어서 경비업자는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이용목적 이외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됨으로 가 급적 이용목적을 특정하고는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회사에 필요한 정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적절히 처리할 필요도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방법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 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배치,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제정, 액세스 권한 한정 등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내부자(종업원, 데이터 관리자, 임원 등)의 소행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어 경비업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감독의무[16]를 부여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준수 규정, ① 문서·매체의 관리, ② 액세스 제한, ③ 방치 금지, ④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복사·외부 유출 제한에 대한 사항 철저히 숙지시키도록 하며, 또한 사내에서 타 부서간의 이용관리도 철저히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 받은 부서가 본래의 이용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16].

그 동안 경비업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경비업자로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경비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실시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新村 出, '廣辭苑 第六版 (普通版)', 東京: 岩波書店. 2008.
- [2] 경비업법, (개정 2009. 4. 01, 법률 제9192호).
- [3] 田中智仁. '警備業の社會學', 東京: 明石書店, 2009.
- [4] 최호준·안황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경기행정론집, 제5권, pp. 45-62, 1991.
- [5] Flacherty, David H.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New York, 1989.
- [8] 堀部政男. '情報公開·個人情報-John Middleton: オーストラリアのプライバシー法', 東京:ジュリスト増刊, 1994.
- [7] 한귀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개인정보보호기본안을 중심으로", 공법학 연구, 제6권 제2호, pp. 81-107, 2005.
- [8]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6권, 제3호, pp. 50-85, 2002.
- [9] 박길선.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0] Regan, P, 'Legislation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11] 石井夏生利. '個人情報保護法の理念と現代的課題-プライバシー權の歴史と國際的視點, 東京: 勁草書房, 2008.
- [12] 平松毅, '個人情報保護-理論と運用', 東京: 有信

堂, 2009.

- [13] www.oecd.org/document, 'OECD Guidelines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 [14] 5 U.S.C, '552a(e)(1)-(5)', 1994.
- [15] 毎日新聞, '35%の企業が職員のインターネット及びメールをモニタリングする, 5. 14: 5, 2002.
- [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저자소개]



안 황 권 (Ahn, Hwang-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現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 ahk@kgu.ac.kr



김 일 곤 (Kim, Il-Gon)

2004년 일본오사카체육대학원 석사
2011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 대구과학대학교 경호무도과
외래교수

email : ilgonkm@daum.net